# 특 허 법 원

제 1 부

판 결

사 건 2022허6532 거절결정(상)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리사 배정일

피 고 특허청장

소송수행자 노재성

변론종결 2023. 3. 30.

판 결 선 고 2023. 4. 27.

# 주 문

-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 청 구 취 지

특허심판원이 2022. 11. 25. 2021원192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.

#### 이 유

#### 1. 기초사실

## 가. 이 사건 출원상표

1) 출원번호/ 출원일: 제40-2020-78371호/ 2020. 5. 12.

# <sup>›› 표정</sup> 원플러스원

3) 지정상품: 상품류 구분 제9류의 기록된 또는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플랫폼, 내려받기 가능한 무선단말기용 인공지능형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, 내려받기 가능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(소프트웨어), 데이터 및 문서 캡쳐/전송/ 저장/ 표시용 컴퓨터 소프트웨어, 데이터검색용 컴퓨터 소프트웨어, 소프트웨어,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, 인터넷정보/ 사이트 검색엔진 소프트웨어,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, 컴퓨터 소프트웨어 플랫폼(computer software platforms).

#### 나. 이 사건 심결의 경위

- 1) 원고의 2020. 5. 12.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에 대하여, 특허청 심사관은 2021. 2. 1. '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고,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'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. 원고는 2021. 4. 1.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, 특허청 심사관은 2021. 5. 27. '2021. 4. 1.자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2021. 2. 1.자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'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.
  - 2)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(2021원

1925호), 특허심판원은 2022. 11. 25. '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하여 그 제공형태, 제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,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'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(이하 '이 사건 심결'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# 2.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

#### 가. 워고

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,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.

- 1)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인 소프트웨어(애플리케이션)의 고 유한 성질을 직감케 하지 않는다. 설령 이 사건 출원상표가 수요자들에게 '상품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판매 방식'(이하 '원플러스원 판매 방식'이라 한다)과 같은 의미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, 이는 지정상품인 소프트웨어(애플리케이션)의 판매 방식 등을 암 시, 강조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.
- 2) 원플러스원 판매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사례는 얼마 되지 않고, 원 플러스원 판매 방식을 모바일 상거래에 적용한 것은 출원인이 최초이자 유일하므로, 이 사건 출원상표는 본질적인 식별력을 갖추었다.
- 3) '원플러스원' 또는 이와 유사한 '원플원', '하나더하기하나', '일더하기일'로 구성된 상표가 출원되었으므로, '원플러스원'에는 본질적인 식별력이 있다.

#### 나. 피고

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, 제7호에 해당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.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다.

- 1)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하여 원플러스원 판매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되므로, 그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 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.
- 2) 이 사건 출원상표는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자타상품 의 식별력이 없고,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다.

## 3.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

## 가.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

#### 1) 관련 법리

- 가)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, 품질, 원재료, 효능,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,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,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4. 8. 16. 선고 2002후 1140 판결, 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7후1824 판결 등 참조).
  - 나)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

"제1호 내지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"를 규정하는데,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.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는 관념,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,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2후2951 판결참조).

다)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시라고 할 것이다(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1후1142 판결 참조).

#### 2) 파다

앞서 든 증거, 갑 제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고려하면,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인 '원플러스원'은 그 지정상품 중 '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플랫폼, 내려받기 가능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(소프트웨어),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, 컴퓨터 소프트웨어 플랫폼' 등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에게 그 지정상품에서 사용되는 제공방법을 강하게 연상시켜 '판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(소프트웨어)'라는 용도를 직감하게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

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한다.

- 가)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인 '**원플러스원**'은 평범한 글씨체의 한글 '원', '플러스', '원'이 띄어쓰기 없이 결합되어 있는 문자 표장이다.
- 나)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외관이 보통의 주의력을 갖는 일반인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.
- 다) '원플러스원'은 사전적으로 '상품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덤으로 주는 판촉 방법'이라는 의미로서, 상품 유통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.
- 라)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은 이사건 출원상표로부터 '상품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덤으로 주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방식 또는 이러한 판매 방식을 지원하는 상품'이라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.
- 마)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애플리케이션, 소프트웨어 등의 유통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에 해당하므로,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하는 것은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.
- 바) 아래와 같이 문자열 '원플러스원' 등으로 구성된 상표가 등록된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 상표의 등록적격성 여부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, 다른 상표의 등록례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근거가 될 수는 없다(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5후339 판결 참조).

표장	원플러스원	One Plus One 언플러스언	원플원	하나더하기하나	일더하기일
등록번호	제0295106호	제0296558호	제1663213호	제1799898호	제1799899호

# 나. 검토 결과의 정리

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, 그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(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이상,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). 이 사건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.

## 4. 결론

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문주형

판사 권보원

판사 한지윤